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합5178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임혜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노송은

피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오승제

변론 종결2023. 4. 19.

판결 선고2023. 6. 14.

주 문

1.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F에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2017. 12. 20.자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C은 E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의 각 주식을 양도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각서의 작성

1) 원고들은 2015. 7. 22.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H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예정 체비지 중 일부 토지 합계 3,942m²(1,192.56평)를 9,53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2. 대금지급방법

원고들은 제3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G에게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일십억원(₩1,000,000,000)	2015. 7. 22.
1차 중도금	일십억원(₩1,000,000,000)	2015. 7. 22.
2차 중도금	사십억원(₩4,000,000,000)	
잔금	삼십오억삼천구백만원(₩3,539,000,000)	

제9조(손해배상 등)

1. G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G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50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가 'H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권 중 50억 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본 사업지구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G는 원고들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업의 지연 등에 따른 문제를 원고들과 협의한 후 토지사용 시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등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2. 사업진행 중 중대한 사항 발생시 G는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특약사항)

2. G는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업약정서(I공사)', 'H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서', '대여금확인서' 등의 서류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G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그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은 2015. 7. 22. G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5. 7. 24. H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종전 G가 가지고 있던 H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권을 F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들은 2018. 1.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E에게 항의하였고, F와 원고들은 2018. 1. 19.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호에서 '사업약정서(I공사)',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서', '대여금확인서' 등의 서류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G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액(10억 원)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은 사업시행대행사를 G에서 F로 변경하는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F가 2018. 6. 30.까지 원고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계약금의 배액인 2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상호간 합의에 따라 10억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로 하며 위 10억 원은 F가 G의 의무를 승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되더라도 면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E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의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양수

- 1) 2016. 9. 22. 기준으로 F의 주주명부에는 F의 보통주 중 E이 21,600주를, E의 자녀인 J가 36,000주를, E의 또 다른 자녀인 K이 7,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F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한 적이 없다.
- 2) E은 피고 C의 남편인 L로부터 9억 89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7. 12. 20. 피고 C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금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 3) 피고 C은 2021. 8. 25.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 1) 원고들은 F, E,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582072호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J, K이 E에 보조참가하였다), 2021. 8. 20. 'F와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F는 2020. 10. 12.까지, E은 2020. 10. 3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이 2017. 12. 20. 피고 C과 체결한 E 명의 F 보통주 21,600주, J 명의 F 보통주 36,000주, K 명의 F 보통주 7,200주에 대한 각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357호),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23. 2. 23. 제1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피고 C은 E, J, K, M, N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581769호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6. 24.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자신(피고 C)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E, J, K, M, N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피고 D이 위 항소심에 피고 C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피고 D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295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2.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1, 2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E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권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7. 22.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진행 중 중대한 사항 발생 시 G는 원고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기로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G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업약정서나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서, 대여금확인서 등 서류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G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G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매매계약상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가 되었던 G의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을 E이 대표이사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인 F가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G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위수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③ 위와 같이 G의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의 G와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

④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들이 G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권이 F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E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서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호를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 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G나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G나 E은 원고들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는 이를 감액하여 10억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E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성립한 상태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로써 오히려 E의 채무가 줄었을 뿐 이로써 추가된 채무나 새로이 생긴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E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원고들의 채권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들은, E이 F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G와 F의 대표이사이고 G가 진행하려 했던 이 사건 사업을 F가 승계한 점, ②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으로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감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E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라고 할 것이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환송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42345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 대법원 2023. 2. 23.자 2022다290600

판결(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820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J, K은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로 볼 수 없고 E이 이 사건 주식 전체의 실질적 권리자로서 이 사건 주식은 E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① E은 F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J, K은 E의 자녀이다.

② J는 2015. 7.경, K은 2016. 9.경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 받았으나, J, K도 그 명의로 된 주식을 E 소유로 인지하고 있으며, J나 K이 F나 그 주식의 매도인에게 인수대금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주주로서 F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도 E이 자신의 채권자인 L를 위하여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C 측에서 J, K에게 위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E은 이 사건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2013년경까지 합계 6,690만 원 상당의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였고, L에게 약 9억원 상당, O 주식회사에게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 당시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E이 상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다1003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7, 1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인 L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이고 같은 주소지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거주하기도 하는 등 피고 C과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② 이 사건 2차 주식양도계약은 이 사건 선행소송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 체결된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0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 64,800주의 가치는 324,000,000원(= 5,000원 × 64,800원)인데, 피고 D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억 원 상당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C의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 취소 사실 통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E, 피고 C, F와 사이에서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F가 주권을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F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 E의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1차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은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전득자인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빈

판사김승현

판사김현주

별지